

주제: 교회에 대하여 (2)

Theme: On Church (2)

(adapted from Chapters 1-3 of *The Book of Church of Order*,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1 장. 교회 정치 원리

CHAPTER 1 The Doctrine of Church Government.

1-1. 교회 정치의 성경적 형태는 대표제도 혹은 장로제도이며,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ㄱ. 교회; ㄴ. 교인; ㄷ. 교회 직원; ㄹ. 교회 치리회; ㅁ. 교회 규례.

1-1. The scriptural form of church government, which is representative or presbyterian, is comprehended under five heads:

a. The Church; b. Its members; c. Its officers; d. Its courts; e. Its orders.

1-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모아 온전케 하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그의 가시적 은혜의 나라이며, 또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이며 동일하다.

1-2. The Church which the Lord Jesus Christ has erected in this world for the gathering and perfecting of the saints is His visible kingdom of grace, and is one and the same in all ages.

1-3. 이 가시적인 보편적 교회의 교인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의 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다.

1-3. The members of this visible Church catholic are all those persons in every nation,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who make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promise submission to His laws.

1-4. 교회의 모든 권한을 집행하는 교회의 직원들은, 성경에 의거하여, 강도장로와 치리장로와 집사들이다.

1-4. The officers of the Church, by whom all its powers are administered, are,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eaching and ruling elders and deacons.

1-5. 교회의 관할권은 개별적인 권한이 아니라, 치리회들의 장로들에 의해 행사되는 공동의 권한이다. 이 치리회들은 한 지교회나 다수의 지교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들은 상호 관계를 유지하여 교회의 통일성을 실현한다.

1-5. Ecclesiastical jurisdiction is not a several, but a joint power, to be exercised by presbyters in courts. These courts may have jurisdiction over one or many churches, but they sustain such mutual relations as to realize the idea of the unity of the Church.

1-6. 직원의 안수는, 노회가 [허락한] 전도 목사가 안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치리회에 의한다(교회헌법 8-6 참조).

1-6. The ordination of officers is ordinarily by a court, except in the case of ordination by a presbytery's evangelist (see BCO 8-6).

1-7. 장로회의 이 성경적 교리는 가시적 교회의 질서를 완전케 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1-7. This scriptural doctrine of Presbytery is necessary to the perfection of the order of the visible Church, but is not essential to its existence.

제 2 장. 가시적 교회의 정의

CHAPTER 2 The Visible Church Defined

2-1. 율법 이전에, 율법 아래, 그리고 현재 복음 아래 있는 가시적 교회는 하나이며 동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2-1. The Visible Church before the law, under the law, and now under the Gospel, is one and the same and consists of all those who make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2-2. 그리스도의 몸의 가시적 통일성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파들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파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말씀과 성례를 근본적으로 정직하게 유지하는 모든 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 지체들로 인정되어야 한다.

2-2. This visible unity of the body of Christ, though obscured, is not destroyed by its division into different denominations of professing Christians; but all of these which maintain the Word and Sacraments in their fundamental integrity are to be recognized as true branch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2-3. 교회가 여러 지교회로 나뉘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범에 의한다.

2-3. It is according to scriptural example that the Church should be divided into many individual churches.

제 3 장. 교회 권한의 본질과 범위

CHAPTER 3 The Nature and Extent of Church Power

3-1.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위임하신 권한은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 전체, 즉 치리 하는 자들과 치리 받는 자들에게 부여되어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행사되는 이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임명하신 그 직원들의 선택에까지 확대된다.

3-1. The power which Christ has committed to His Church vests in the whole body, the rulers and those ruled, constituting it a spiritual commonwealth. This power, as exercised by the people, extends to the choice of those officers whom He has appointed in His Church.

3-2. 교회 권한은 온전히 영적인 것으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교회의 직원들은 때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성례를 집행하는 일, 그릇된 자를 책망하는 일, 병든 자를 심방 하는 일, 역경에 처한 자를 위로하는 일로서 질서의 권한이다; 때로는 그들이 재판의 형식에 따라 교회 치리회에서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이는 재판의 권한이다.

3-2. Ecclesiastical power, which is wholly spiritual, is twofold. The officers exercise it sometimes severally, as in preaching the Gospel,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reproving the erring, visiting the sick, and comforting the afflicted, which is the power of order; and they exercise it sometimes jointly in Church courts, after the form of judgment, which is the power of jurisdiction.

3-3.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요 통치기구로서의 교회의 유일한 기능들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고 시행하며 집행하는 데에 있다.

3-3. The sole functions of the Church, as a kingdom and government distinct from the civil commonwealth, are to proclaim, to administer, and to enforce the law of Christ revealed in the Scriptures.

3-4. 교회의 권한은 오직 영적일 뿐이다; 국가의 권한은 강제력을 포함한다. 교회의 헌법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며, 국가의 헌법은 인간 이성 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교회는 국가를 위한 통치 기구를 구성, 또는 변경할 권리가 없으며, 국가는 교회를 위해서 신조나 정책을 만들 권리가 없다. 그들은 동심원적 궤도를 운행하는 유성들과 같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3-4. The power of the Church is exclusively spiritual; that of the State includes the exercise of force.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derives from divine revel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must be determined by human reason and the course of providential events. The Church has no right to construct or modify a government for the State, and the State has no right to frame a creed or polity for the Church. They are as planets moving in concentric orbits: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and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Matthew 22:21).

3-5. 교회는, 자체 예식과 직원들과 치리회들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교회와 치리, 신앙의 전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제정하신 대리기관이다.3-5. The Church, with its ordinances, officers and courts, is the agency which Christ has ordained for the edification and government of His people, for the propagation of the faith, and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3-6. 교회의 권한 행사는, 공동으로 하든 혹은 개별적으로 하든, 입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도와 일치할 때, 또 그의 말씀 안에서 임명된 치리회나 직원들에 의해서 행사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3-6. The exercise of ecclesiastical power, whether joint or several, has the divine sanction when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s enacted by Christ, the Lawgiver, and when put forth by courts or by officers appointed thereunto in His Word.